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지역분 비과세 규정</p> <p>○ (비과세 대상)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지정·고시된 공공시설용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대상 등 정비</p> <p>○ (범위 명확화)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<u>과세기준일</u> 현재 미집행된 토지</p> <p>○ (미집행 규정 신설) 국토계획법 제88조의 <u>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</u>*가 <u>진행되지 않은 경우</u></p> <p>* ①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② 모든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 또는 사용권원 확보 ③ 국가지자체가 사실상 점유한 도로 - 다만, <u>도시정비법</u> 제35조에 따른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<u>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제외</u></p> <p>○ (대상사업 정비) 각 개별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도시·군계획시설(도시·군관리계획) 결정 등이 <u>의제되는 경우도 포함</u></p> <p>※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토지 용도제한 등 사권제한 발생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좌 동)</p>